

「고흥군의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7월 9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고흥군의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고흥군 행정기구 일부 개편으로 인한 소관 부서 조정
 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(안 제3조제2항제2호·제3호)
 - 2. 행정자치위원회
 - 기획실, 종합민원실, 인구정책실, 주민복지과, 행정과, 재무과, 여성가족과, 문화체육과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……
 - ⇒ 기획실, 종합민원실, 인구정책실, 주민복지과, 행정과, 재무과, 여성가족과, 문화체육과, 경제산업과, 환경정책과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
……………

3. 산업건설위원회

- 관광정책실, 우주항공추진단, 경제산업과, 농업정책과, 해양수산과, 축산정책과, 환경산림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문화체육과”를 “문화체육과, 경제산업과, 환경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제산업과, 농업정책과, 해양수산과, 축산정책과, 환경산림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스마트팜사업소, 휴양공원사업소”를 “신재생에너지과, 농업정책과, 축산정책과, 수산정책과, 해양개발과, 산림정원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스마트팜사업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 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실, 종합민원실, 인구정책 실, 주민복지과, 행정과, 재무과, 여성가족과, <u>문화체육과</u>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관광정책실, 우주항공추진단, <u>경제산업과, 농업정책과, 해양수산과, 축산정책과, 환경산림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스마트팜사업소, 휴양공원사업소</u> 소관에 관한 사항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 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문화체육과</u>, <u>경제산업과, 환경정책과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 <u>신재생에너지과, 농업정책과, 축산정책과, 수산정책과, 해양개발과, 산림정원과, 재난안전과, 건설과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스마트팜사업소</u> -----</p>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